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고단424 판결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8고단424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경

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3. 30.

##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중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3. 11:45경 서울 중구 C, 4층 D 고시원 408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누라, 니 보지 빨고 싶어. 내 방으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고시원 주인인 피해자 E(여, 52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 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상해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은 2018. 1. 5.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제1항 기재의 음란문자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자신의 뺨을 건드리며 깨우자화가 나 "썅년, 개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나오 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약 7회 정도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5. 14:59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제1, 2항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대기 하던 중 술에 취해 "에이 씹할 좆같네, 씹할 놈, 씹할 년, 칼로 눈깔 후 벼파버린다. 밖에 나가면 경찰관과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탁자, 소파, 복사기 등을 걷어차고, 또한 그곳에 있는 여자경찰관인 경사 G에게 "야, 절벽. 가까이서 보니 더 절 벽이네. 씹할 년. 엉덩이 골이 있는 거 보니 여자는 맞네. 니 같은 년도 남편한테 대주 냐. 그래 니도 얼마나 하고 싶을까. 앞뒤가 똑 같은 개지랄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상해진단서
- 1. 피해자 음란문자내용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 1. 피의자 폭행영상 CD, 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4매
- 1. 주취소란 영상 CD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연관 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상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9. 11.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10회 이상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파사 추성엽